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행사기준

제3장 행사방법

제4장 행사절차

제5장 공시 등

별지1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제 정 2009.02.04.

개 정 2014.02.01.

개 정 2016.05.01.

규정명칭변경 2021.12.30.

개정 2024.07.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3조(행사여부) ① 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장기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제외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중립적 투표) 및 제6조(행사금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투자일임재산 중 의결권행사 위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 및 방법은 의결권 행사 위임 계약에 따른다.

제4조(행사방향)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법인의 내재가치 상승
4. 법인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5조(중립적 투표) ① 회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중립적 투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회사 및 회사와 특수관계인 및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관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2)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관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 2)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으로 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회사가 법 제8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중립적 투표 할 것

제6조(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5조(중립적 투표) 내지 제6조(행사금지)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사방법

제8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12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권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결정) ① 의결권의 행사 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별지 제1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며, 해당 종모 분석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담당자 소속 주식운용본부장이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상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및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전략본부장이 본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상 관련 내용이 부재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안
2. 해당 주식 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3. 기타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14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투자전략본부장 또는 투자전략본부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 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공시 등

제15조(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

제16조(공시) ① 회사는 직접 또는 사무수탁회사를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 회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 유지)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부 칙(2009. 02.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2.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5.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7.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7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1]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 적정성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임직원에 대한 보상,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는 반대한다.
II. 정관변경 일반사항	
1. 회사명 변경	인지도 하락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사유 발생시 반대한다.
2. 회계연도 변경	최근 3년 내 주주가치 증진을 위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2번 이상 변경할 시에는 반대한다.
3. 주총 의결정족수	주총 의결정족수 변경에는 반대한다.
4. 의결권 대리행사자 범위	의결권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 반대한다.
5.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수단이나 서면에 의해서만 투표를 하도록 한다면 이에 반대한다.
II-2. 정관변경 이사회관련	
6. 이사회 규모	과도한 비율로 이사증원이나 감원을 하여, 특정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 하거나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7. 사외이사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비중을 줄이는 것에 반대한다.
8.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	이사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전문적 능력과 소양을 갖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9.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 도입에 반대한다.
10. 이사회 후보 일괄투표방식 변경	이사회 후보 일괄투표방식에 반대한다.
II-3. 정관변경 감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	

11.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중을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II-4. 임직원보상	
12. 이사 및 경영진 보상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사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13. 주식연계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유보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사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하는 경우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14. 채무재조정	채무 재조정을 위해 보통주나 우선주를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해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이 과도하여 고객의 이익에 침해할 것이 명백할 경우 반대한다.
15. 증권의 전환	증권의 전환에 대하여도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이 과도하여 고객의 이익에 침해할 것이 명백할 경우 반대한다.
16. 신주우선인수권	신주우선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 반대한다.
17. 우선주	우선주 발행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18. 사내이사의 선임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반대한다.
19. 사외이사의 선임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거나, 기존 임원의 경우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는 선임에 반대한다.
20.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2, 23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21. 이사보수한도 승인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에 대하여 반대한다.
22. 감사보수한도 승인	25의 기준을 준용한다.
23.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황금낙하산 계약 등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
V.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낮게 조정하거나, 기발행 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VI. 합병 및 영업양수도	
25. 합병 및 인수	사내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안별로 검토한다.
26. 영업양수도	29호 안을 준용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요 영업자산 양도에 반대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안별로 검토한다.
27. 회사분할	29호안을 준용하며, 그 외 사안별로 검토한다.
VII. 자본의감소	
28. 자본의 감소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거나, 회사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안을 제외할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VIII. 기타	
29. 주식분할 및 병합	법정주식 수가 비례적으로 감소(증가)하지 않는 주식병합(분할)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반대한다.
30. 신주우선인수권	제3자에 배정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발행사유와 가격, 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주주가치에 이득이 되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31. 지주회사 설립	주주가치 훼손이 가능할 경우에는 반대한다.